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89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및 유예사유 확대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및 유예사유 확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제2종 가축전염병¹⁾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한편, 병성감정²⁾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일반적 살처분 명령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경우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유예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뉴캐슬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illegible]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illegible]

현행	개정안
<u>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예방적 살처분 명령) ①</u> <u>시장·군수·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³⁾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u> <u>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u>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u> <u>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u>

현행	개정안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	<u>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할 수 있다. 1. <u>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u> 2. <u>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u> 3. <u>관할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 ----- ----- ----- ----- -----제20조 또는 제20조의2----- -----

현행	개정안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 ----- <u>제20조제1항</u> ----- -----.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u>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u> ----- ---. ----- ----- -----.
3의2. ~ 6. (생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③ ----- ----- ----- ----- -----.

현행	개정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5. (생략) ④ ~ ⑦ (생략)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	-----. 1. (현행과 같음) 2. ----- ----- -----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의2제1항-----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 ----- ----- ----- ----- -----

현행	개정안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 -----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 ----- ----- -----제20조, 제20조의2----- ----- ----- ----- ----- ----- ----- ----- -----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 ----- ----- ----- ----- ----- -----.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 ----- ----- ----- ----- ----- ----- -----제20조, 제20조의2----- ----- -----. 제56조(벌칙) ----- ----- -----

현행	개정안
한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20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28조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살처분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i) 제20조제1항 본문과 이를 준용하는 제28조는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⁵⁾에 대한 살처분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일반적 살처분 명령 제도⁶⁾),

ii) 제20조제1항 단서에서는 우역·우폐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⁷⁾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도).

3) 주어와 관련된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5)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포함함.

6)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개정안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지칭하고 있으므로,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음.

7) 야생조류·멧돼지, 물렁진드기 등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처분이 이루어졌음.

【 최근 5년간 주요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현황 】

(단위 : 건, 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건수	14	2	5	7	10
	살처분두수	364,839	4,940	9,472	34,788	104,522
구제역	발생건수	3	-	-	-	11
	살처분두수	2,272	-	-	-	1,571
럼피스킨	발생건수	-	-	-	-	107
	살처분두수	-	-	-	-	6,45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연도 ⁸⁾	2019-20년	2020-21년	2021-22년	2022-23년	2023-24년
	발생건수	-	109	47	75	31
	살처분두수	-	29,934,000	7,308,155	6,609,000	3,605,69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현행법은 가축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 소유자의 신원·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살처분을 명령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을부터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계절성을 보임.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⁹⁾으로 정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격리장소에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살처분 명령 제도를 i)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명령 근거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i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도의 경우 유예사유를 확대하여 기존의 병성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두 가지 형태의 살처분 명령 제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명령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③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 현행법 및 개정안의 살처분 명령 제도 규정 비교 】

		근거 규정	대상 가축전염병	살처분 대상 가축	살처분 유예 조건
일반적 살처분	현행법	제20조 제1항 본문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제2종 가축전염병	대상 <u>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u>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및 제28조			
예방적 살처분	현행법	제20조 제1항 단서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대상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으로 인하여 대상 가축전염병의 <u>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u>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제20조의2	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¹⁰⁾	대상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으로 인하여 대상 가축전염병의 <u>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u>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2. <u>지속적인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u> 3. <u>지방가축방 역심의회 의 심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u>

예방적 살처분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사전에 신속하게 제거하는 초동방역조치로서, 발생 초기에 추가적인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 대상으로 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살처분을 집행한 가축 소유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트라우마 등 정신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종식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사전에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간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¹¹⁾ 살처분 보상금¹²⁾·생계안정비용¹³⁾ 등을 지원하여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10) 해당 가축전염병은 모두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임.

11)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고위험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살처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살처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고, 향후에도 축종별로 농가 방역우수도 등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최근 살처분 완화 노력

- (AI) 발생 농장 3km → 500m내(2주 간격 위험평가, 범위 조정)('21.10.)
- (ASF) 발생 농장 500m내 → 발생 농장만 살처분('21.10.)
- (구제역) 발생 농장 500m내 → 시군 최초 발생(이후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16.2.)
- (럼피스킨) 발생 농장 → 양성 개체만 선별적 살처분('23.11.)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신중하게 명령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유예사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고,

특히, 개정안에서 확대하고 있는 유예사유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방역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은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근거조항을 분리하면서 현행 범상 명령 대상지역 중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멧돼지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는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에¹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대상지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14)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관련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대상지역 규정은 지난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차원에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음.

참 고

주요 가축전염병별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백신접종유형	백신미접종유형		
살 처 분	의무	○ 발생 농장 500m 내	○ 시군 최초발생 농장 -추가 발생 시 항원 양성 개체 또는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	○ 발생농장	○ 발생농장 ※23.11.13일부터 양성 개체만 선별적 살처분 (공문)
	확대	○ 500m~3km내 동일 축종 농장 -2주마다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 ○ 동일소유주 농장 ○ 역학적으로 감염 의심 농장	○ 추가 발생농장 및 500m 내 우제류 ○ 역학적으로 감염 의심 우제류	○ 3km내 우제류 ○ 동일소유주 농장 ○ 역학적으로 감염 의심 우제류	○ 500m 내 농장 ○ 동일소유주 농장 ○ 역학적으로 감염 의심 농장
<참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 : 총 15종(제1종 7, 제2종 8) ○ (제1종)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뉴캐슬병, 고병원성 AI ○ (제2종) 브루셀라병, 결핵병, 소해면상뇌증,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이 동 제 한	지역	○ 관리지역(~500m), 보호지역(500m~3km), 예찰지역(3km~10km)			
	설정	○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조치 완료일			
	해제	○ 이동제한 4주 경과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긴급백신 접종 실시 -백신접종 후 3주 경과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긴급백신 접종 미실시 -이동제한 3주 경과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긴급백신 접종 실시 -백신접종 후 1개월 경과 & 최근 3주간 미발생 &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긴급백신 접종 미실시 -이동제한 3주 경과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이동제한 30일 경과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긴급백신 접종 실시 -백신접종 후 1개월 경과 & 최근 4주간 미발생 &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 긴급백신 접종 미실시 -이동제한 4주 경과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